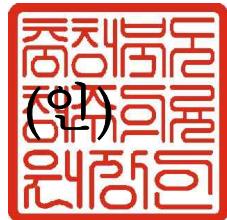


□ 공고 제2018-01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1.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35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사실”을 “주사실, 인공신장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10조 (간호부) ①간호부장 밑에 다음 각 호의 팀을 둔다.</p> <p>1. 외래간호팀 : 외래, 응급실, 수술실, <u>주사실</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 (간호부) ①----- -----</p> <p>1. ----- <u>주사실</u>, <u>인공신장실</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행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67	1	64	6	39	98	177	159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499		63	4	33	85	152	142	20
		의무직		50		50						
		의사		44		44						
		치과의		4		4						
		한의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		80			2	6	18	34	20	
		임상병리사		18								
		방사선사		13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6								
		사회복지사		3								
일 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2								
		의무기록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사		78					5	14	39	20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행정		33								
		전기기사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별표 1] 개정(안)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74	1	64	6	39	99	179	163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06		63	4	33	86	154	146	20
		의무직		50		50						
		의사		44		44						
		치과의		4		4						
		한의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		87			2	6	19	36	24	
		임상병리사		19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6								
		사회복지사		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2								
		의무기록사		3								
		영양사		5								
일 반		간호조무사		78					5	14	39	20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행정		33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기능		25					2	8	12	3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3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 공고 제2018-02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 1.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1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일당 및 야간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정기상여금, 시간외근무수
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통상시급 : (일당÷8
시간)+{(위험수당+장기근속수당+기술수당+정기상여금)÷243시간}을 삭제한
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보수종류별 지급기준

종 류	담당업무별 지급대상	세 부 기 준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시기
일 당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노동부고시 최저시급 × 근로시간	매월 말일
		출장겸진 및 일반겸진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 10,650원(시간당)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무기계약직 및 단기고용직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당해 월의 일수 × 38,790원(1일)	매월 말일
		민원업무전담, 사무원, 병동도우미	당해 월의 일수 × 38,220원(1일)	
		영양실 조리원	· 당해 월의 일수 × 39,280원(1일)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마다 기본급 2% 가산	
		장례식장 조리원	· 당해 월의 일수 × 38,670원(1일)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마다 기본급 2% 가산	
야간근무 수 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야간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조리원 외) 야간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조리원)	보수규정에 의함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매월 말일
민원업무 수 당	· 제29조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원 (원무팀 칭구, 부속실 및 건강검진 안내 접 수 업무 담당 직원)	월 50,000원	매월 말일
정기 상 여 급	공통(단, 단시간근로자 제외)		당해 월의 일당총액 / 3	매월 말일
시간외 근무수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조리원 외)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조리원)	보수규정에 의함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매월 말일
휴일근로 수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휴일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조리원)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2)	매월 말일
주휴수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조리원)	(주휴일수×통상시급×8) - (주휴일수×일당)	매월 말일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 통상시급 : (일당÷8시간)+{(위험수당+장기근속수당+기술수당+정기상여금)÷243시간}

(개정)

[별표 2]

보수종류별 지급기준

종 류	담당업무별 지급대상	세 부 기 준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시기
기본급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노동부고시 최저시급 × 근로시간	매월 말일
		출장겸진 및 일반겸진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 11,000원(시간당)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무기계약직 및 단기고용직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월 1,210,540원	매월 말일
		민원업무전담, 병동도우미, 국제진료도우미	월 1,192,750원	
		영양실 조리원	월 1,276,08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마다 기본급 2% 가산	
		장례식장 조리원	월 1,256,42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마다 기본급 2% 가산	
야간근무 수 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야간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	보수규정에 의함	매월 말일
민원업무 수 당	<삭 제>			
정기 상 여 급	공통(단, 단시간근로자 제외)		당해 월의 기본급 / 3	매월 말일
시간외 근무수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	보수규정에 의함	매월 말일
휴일근로 수당	· 제17조 제3항 · 제29조	휴일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	(통상임금×1.5/209×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2.0/209×휴일연장근로시간)	매월 말일
주휴수당	<삭 제>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 <삭 제>

□ 공고 제2018-03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청
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1.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인)



규정 제436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의 제목 “(임원의 휴가)”를 “(원장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상임이사 이상 임원”을 “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6호 중 “퇴직예정일 전 1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예정일 전일을 기산하여 퇴직 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년 미만 : 없음

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 1개월 이내

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 3개월 이내

라. 30년 이상 : 6개월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8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 중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 준비 휴가 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3조의 2 (임원의 휴가) ①<u>상임이사 이상 임원</u>은 연간 8일의 정기휴가를 준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 10일의 정기휴가를 준다.</p> <p>②~④ (생략)</p> <p>제28조(청원휴가) ①~④ (생략)</p> <p><u>⑤제1항의 청원휴가는 연 통산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30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p> <p>1.~5. (생략)</p> <p>6.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퇴직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u>퇴직예정일 전 1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3조의 2 (원장의 휴가) ①<u>원장</u>-----</p> <p>-----</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청원휴가) ①~④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30조 (특별휴가) -----</p> <p>-----.</p> <p>1.~5. (현행과 같음)</p> <p>6. -----</p> <p>-----<u>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예정일 전일을 기산하여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u></p> <p>가. 10년 미만 : 없음</p> <p>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 1개월 이내</p> <p>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 3개월 이내</p> <p>라. 30년 이상 : 6개월 이내</p>

□ 공고 제2018-04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청
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1.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37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최저임금보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명절휴가비”로 “근속장려수당”을 “근속장려수당, 최저임금보전수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최저임금보전수당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특별근무수당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최저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8-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임금총액의 지급률) 연간 임금총액의 지급률은 별표8-1과 같다.

제3조(감액방법) 별표8-1의 지급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에 의한 금액은 다음 각 항의 순서로 감액한다.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월에 지급하여야 할 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월의 총액을 산출한다.

②제1항에 별표8-1의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하고, 그 나머지를 해당 월 감액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감액분을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

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며, 감액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한다. 단, 퇴직하는자의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출시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u>가족수당</u>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p> <p>8.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u>가계지원비</u>, <u>명절휴가비</u>,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당직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간호수당, 진료지원업무수당, <u>근속장려수당</u>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평균보수월액은 평균임금으로 갈음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p> <p>-----</p> <p>----- <u>가족수당, 최저임금보전수당</u>-----</p> <p>8.-----</p> <p>-----</p> <p>-----</p> <p>----- <u>명절휴가비</u>-----</p> <p>-----</p> <p>-----</p> <p>-----</p> <p>----- <u>근속장려수당, 최저임금보전수당</u>-----</p> <p>-----</p> <p>-----</p>
<p>제27조 (수당의 종류) ①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 23.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27조 (수당의 종류) ①-----</p> <p>-----</p> <p>1. ~ 23. (현행과 같음)</p> <p><u>24. 최저임금보전수당</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별표 1)

기본급표

(단위 : 원)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	3,053,500	2,617,000	2,338,800	1,929,300	1,731,300	1,543,700	1,393,500	1,266,100	1,731,300
2	3,166,500	2,723,900	2,433,300	2,019,000	1,810,300	1,618,600	1,458,800	1,326,000	1,844,000
3	3,282,800	2,832,600	2,531,300	2,111,700	1,893,900	1,697,700	1,528,200	1,391,600	1,963,800
4	3,400,000	2,943,600	2,633,200	2,206,400	1,981,800	1,778,300	1,602,100	1,460,900	2,091,500
5	3,519,100	3,056,400	2,737,900	2,303,700	2,072,800	1,862,400	1,679,800	1,535,900	2,217,100
6	3,639,400	3,170,100	2,844,700	2,403,900	2,166,000	1,948,300	1,758,300	1,606,500	2,350,300
7	3,761,000	3,284,900	2,953,200	2,504,300	2,260,000	2,034,700	1,836,300	1,676,400	2,491,200
8	3,883,000	3,400,300	3,062,900	2,605,000	2,354,300	2,117,400	1,911,600	1,744,500	2,628,400
9	4,006,100	3,516,000	3,173,000	2,706,000	2,444,000	2,196,600	1,983,800	1,809,000	2,772,900
10	4,129,000	3,631,600	3,284,000	2,800,800	2,530,000	2,271,300	2,053,000	1,872,000	2,925,400
11	4,252,100	3,748,300	3,387,300	2,890,700	2,610,800	2,343,800	2,119,300	1,932,400	3,071,900
12	4,379,800	3,858,000	3,487,200	2,979,100	2,690,200	2,414,600	2,184,900	1,993,400	3,225,600
13	4,498,500	3,960,700	3,582,100	3,062,400	2,765,600	2,482,700	2,247,900	2,052,800	3,370,700
14	4,608,500	4,056,600	3,670,600	3,141,000	2,837,900	2,547,500	2,309,100	2,110,400	3,522,400
15	4,710,000	4,146,700	3,754,200	3,216,600	2,906,600	2,610,000	2,367,600	2,165,600	3,663,300
16	4,804,700	4,231,700	3,832,800	3,287,300	2,971,900	2,670,100	2,424,200	2,218,400	3,809,800
17	4,892,700	4,310,800	3,906,700	3,354,800	3,034,500	2,726,400	2,474,500	2,269,200	3,943,400
18	4,974,400	4,384,600	3,976,600	3,418,800	3,094,300	2,781,100	2,531,100	2,318,800	4,081,500
19	5,050,100	4,453,500	4,042,400	3,479,300	3,150,500	2,833,400	2,581,700	2,367,800	4,204,100
20	5,120,900	4,517,900	4,104,000	3,536,300	3,204,300	2,883,400	2,629,900	2,413,000	4,330,100
21	5,186,400	4,578,100	4,161,900	3,591,200	3,255,500	2,931,100	2,675,500	2,456,700	4,438,400
22	5,247,000	4,634,600	4,216,500	3,642,700	3,303,800	2,977,000	2,719,300	2,498,800	4,549,400
23	5,303,200	487,600	4,267,900	3,691,100	3,350,500	3,020,500	2,760,900	2,539,000	4,663,300
24	5,355,400	4,737,400	4,316,000	3,737,300	3,395,000	3,062,600	2,800,900	2,576,600	4,779,900
25	5,398,600	4,783,300	4,361,400	3,781,200	3,436,900	3,102,400	2,839,000	2,613,800	4,891,700
26	5,439,400	4,821,900	4,404,100	3,822,600	3,477,200	3,141,200	2,873,500	2,648,000	
27	5,477,600	4,857,700	4,439,600	3,862,000	3,511,300	3,173,400	2,903,200	2,676,700	
28		4,891,700	4,473,800	3,894,900	3,543,100	3,204,600	2,931,800	2,705,000	
29			4,505,100	3,925,900	3,573,900	3,233,900	2,959,500	2,732,300	
30			4,535,600	3,956,400	3,603,000	3,262,400	2,986,300	2,758,600	
31				3,984,500	3,630,700	3,290,100	3,012,600	2,783,800	
32				4,011,200					

(개정)

(별표 1)

기본급표

(단위 : 원)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	3,138,000	2,689,400	2,403,500	1,982,700	1,779,200	1,586,400	1,432,000	1,299,000	1,776,300
2	3,254,100	2,799,300	2,500,600	2,074,800	1,860,400	1,663,400	1,499,100	1,360,400	1,891,900
3	3,373,600	2,910,900	2,601,400	2,170,100	1,946,400	1,744,700	1,570,400	1,427,700	2,014,800
4	3,494,100	3,025,100	2,706,100	2,267,400	2,036,700	1,827,600	1,646,400	1,498,800	2,145,800
5	3,616,500	3,140,900	2,813,700	2,367,400	2,130,100	1,913,600	1,726,300	1,575,800	2,274,700
6	3,740,000	3,257,800	2,923,400	2,470,400	2,226,000	2,002,200	1,806,800	1,648,200	2,411,400
7	3,865,100	3,375,800	3,034,900	2,573,600	2,322,500	2,090,900	1,887,100	1,719,900	2,555,900
8	3,990,500	3,494,400	3,147,600	2,677,100	2,419,500	2,176,000	1,964,500	1,789,800	2,696,700
9	4,117,000	3,613,300	3,260,800	2,780,900	2,511,700	2,257,400	2,038,600	1,856,000	2,844,900
10	4,243,300	3,732,100	3,374,800	2,878,300	2,599,900	2,334,100	2,109,800	1,920,600	3,001,400
11	4,369,800	3,852,000	3,481,100	2,970,600	2,683,000	2,408,600	2,177,800	1,982,600	3,151,700
12	4,501,000	3,964,700	3,583,800	3,061,500	2,764,600	2,481,300	2,245,400	2,045,200	3,309,400
13	4,623,000	4,070,300	3,681,200	3,147,100	2,842,200	2,551,300	2,301,100	2,106,100	3,458,300
14	4,736,100	4,168,800	3,772,200	3,228,000	2,916,400	2,618,000	2,373,000	2,165,200	3,613,900
15	4,840,300	4,261,400	3,858,000	3,305,600	2,987,000	2,682,100	2,433,100	2,221,900	3,758,500
16	4,937,700	4,348,900	3,938,900	3,378,300	3,054,100	2,744,000	2,491,300	2,276,000	3,908,800
17	5,028,100	4,430,100	4,014,800	3,447,700	3,118,500	2,801,900	2,548,100	2,328,100	4,045,900
18	5,112,100	4,505,900	4,086,600	3,513,400	3,179,900	2,858,100	2,601,100	2,379,000	4,187,600
19	5,189,900	4,576,700	4,154,200	3,575,600	3,237,700	2,911,800	2,653,100	2,429,300	4,313,400
20	5,262,600	4,642,900	4,217,500	3,634,100	3,292,900	2,963,100	2,702,700	2,475,700	4,442,600
21	5,329,900	4,704,800	4,277,100	3,690,600	3,345,500	3,012,200	2,749,500	2,520,500	4,553,700
22	5,392,300	4,762,800	4,333,200	3,743,500	3,395,300	3,059,400	2,794,500	2,563,700	4,667,600
23	5,450,000	4,817,300	4,386,000	3,793,300	3,443,200	3,104,100	2,837,300	2,605,000	4,784,500
24	5,503,600	4,868,500	4,435,300	3,840,700	3,489,000	3,147,300	2,878,400	2,643,500	4,904,100
25	5,547,900	4,915,600	4,482,100	3,885,800	3,532,100	3,188,200	2,917,600	2,681,700	5,018,800
26	5,590,000	4,955,300	4,526,000	3,928,300	3,573,400	3,228,200	2,953,000	2,716,800	
27	5,629,200	4,992,100	4,562,500	3,968,800	3,608,500	3,261,200	2,983,500	2,746,200	
28		5,027,100	4,597,600	4,002,700	3,641,100	3,293,200	3,013,000	2,775,300	
29			4,629,800	4,034,500	3,672,700	3,323,400	3,041,300	2,803,300	
30			4,661,100	4,065,900	3,702,800	3,352,700	3,068,900	2,830,300	
31				4,094,800	3,731,100	3,381,100	3,095,900	2,856,100	
32				4,112,200					

(현행)

(별표 5)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11. 특별 근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및 <u>공휴일 등 응급실에 나와서 시간외</u> 응급환자수술 및 응급조치 등 특별근무 하였을 경우 의사, 간호업무보조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p>※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무수당 및 일숙직수당과 병급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조치시 : 회당30천원 응급수술 · 분만시 : 회당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일 건강증진센터 근무직원, 근무시간외 출장검진 직원, 그 외 검진관련 휴무일 근무직원, 휴무일 미생물 검사 등 특수 업무수행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업무보조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 회당20천원 의사 : 100,000원 직원 : 50,000원
<u>20</u>	(신설)	

(개정)

(별표 5)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11. 특별 근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및 <u>공휴일에 시간외</u> 응급환자수술 및 응급조치 등 특별근무 하였을 경우 의사, 간호사, 간호업무보조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p>※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무수당 및 일숙직수당과 병급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조치시 : 회당30천원 응급수술 · 분만시 : 회당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일 건강증진센터 근무직원, 근무시간외 출장검진 직원, 그 외 검진관련 휴무일 근무직원, 휴무일 미생물 검사 등 특수 업무수행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업무보조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 회당20천원 의사 : 100,000원 직원 : 50,000원
<u>20. 최저임금 보전수당</u>	<p><u>○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의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직원</u></p> <p><u>※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은 관련법을 준용한다.</u></p>	<u>정부고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총액의 차액</u>

(현행)

[별표8]

연간 임금총액 지급률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약사
1	100%	100%	100%	98.92%	97.10%	92.21%	89.59%	91.37%	99.24%
2	100%	100%	100%	98.15%	96.36%	91.69%	89.17%	90.89%	99.06%
3	100%	100%	100%	97.37%	95.64%	91.20%	88.76%	90.41%	98.94%
4	100%	100%	100%	96.63%	94.95%	90.71%	88.36%	89.95%	98.91%
5	100%	100%	100%	96.24%	94.64%	90.59%	88.32%	89.81%	98.79%
6	100%	100%	99.55%	95.54%	93.98%	90.12%	87.93%	89.38%	98.77%
7	100%	99.63%	98.73%	94.54%	93.08%	89.44%	87.38%	88.78%	98.25%
8	100%	98.47%	97.63%	93.91%	92.50%	89.01%	87.03%	88.39%	97.98%
9	100%	97.79%	96.97%	93.34%	91.96%	88.60%	86.70%	88.01%	97.72%
10	99.56%	97.16%	96.37%	93.18%	91.79%	88.47%	86.62%	87.87%	97.70%
11	99.40%	97.01%	96.19%	92.71%	91.36%	88.13%	86.33%	87.55%	97.32%
12	98.80%	96.49%	95.70%	92.30%	90.96%	87.84%	86.08%	87.26%	96.90%
13	98.26%	96.01%	95.24%	91.92%	90.62%	87.56%	85.85%	86.99%	96.49%
14	97.74%	95.56%	94.84%	91.58%	90.31%	87.32%	85.66%	86.75%	96.03%
15	97.28%	95.16%	94.46%	91.40%	90.14%	87.23%	85.60%	86.66%	95.65%
16	96.99%	94.92%	94.24%	91.12%	89.88%	87.03%	85.44%	86.48%	95.16%
17	96.61%	94.56%	93.93%	90.85%	89.64%	86.86%	85.30%	86.32%	94.65%
18	96.25%	94.25%	93.63%	90.61%	89.43%	86.69%	85.16%	86.17%	94.15%
19	95.89%	93.96%	93.36%	90.40%	89.24%	86.60%	85.12%	86.09%	93.59%
20	95.58%	93.68%	93.11%	90.39%	89.23%	86.55%	85.06%	86.05%	93.05%
21	95.50%	93.62%	93.07%	90.21%	89.08%	86.49%	85.03%	85.98%	91.44%
22	95.22%	93.40%	92.86%	90.05%	88.92%	86.37%	84.95%	85.89%	91.68%
23	94.97%	93.19%	92.66%	89.88%	88.79%	86.27%	84.87%	85.81%	90.93%
24	94.75%	92.99%	92.48%	89.74%	88.66%	86.19%	84.79%	85.74%	90.20%
25	94.54%	92.80%	92.31%	89.61%	88.54%	86.11%	84.75%	85.73%	89.46%
26	94.34%	92.65%	92.15%	89.47%	88.43%	86.03%	84.74%	85.73%	
27	94.26%	92.57%	92.09%	89.44%	88.33%	86.03%	84.73%	85.30%	
28	94.17%	92.52%	92.03%	89.41%	88.31%	86.02%	84.72%		
29	94.11%	92.47%	91.98%	89.38%	88.29%	86.02%			
30	94.05%	92.42%	91.93%	89.35%	88.27%	86.01%			
31	93.98%	92.37%	91.88%	89.33%	88.27%				
32					88.24%				

(개정)

[별표8]

<삭 제>

(현행)

[별표8-1]

연간 임금총액 지급률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약사
1	100.00%	100.00%	100.00%	99.42%	97.60%	92.71%	90.09%	91.87%	99.74%
2	100.00%	100.00%	100.00%	98.65%	96.86%	92.19%	89.67%	91.39%	99.56%
3	100.00%	100.00%	100.00%	97.87%	96.14%	91.70%	89.26%	90.91%	99.44%
4	100.00%	100.00%	100.00%	97.13%	95.45%	91.21%	88.86%	90.45%	99.41%
5	100.00%	100.00%	100.00%	96.74%	95.14%	91.09%	88.82%	90.31%	99.29%
6	100.00%	100.00%	100.00%	96.04%	94.48%	90.62%	88.43%	89.88%	99.27%
7	100.00%	100.00%	99.23%	95.04%	93.58%	89.94%	87.88%	89.28%	98.75%
8	100.00%	98.97%	98.13%	94.41%	93.00%	89.51%	87.53%	88.89%	98.48%
9	100.00%	98.29%	97.47%	93.84%	92.46%	89.10%	87.20%	88.51%	98.22%
10	100.00%	97.66%	96.87%	93.68%	92.29%	88.97%	87.12%	88.37%	98.20%
11	99.90%	97.51%	96.69%	93.21%	91.86%	88.63%	86.83%	88.05%	97.82%
12	99.30%	96.99%	96.20%	92.80%	91.46%	88.34%	86.58%	87.76%	97.40%
13	98.76%	96.51%	95.74%	92.42%	91.12%	88.06%	86.35%	87.49%	96.99%
14	98.24%	96.06%	95.34%	92.08%	90.81%	87.82%	86.16%	87.25%	96.53%
15	97.78%	95.66%	94.96%	91.90%	90.64%	87.73%	86.10%	87.16%	96.15%
16	97.49%	95.42%	94.74%	91.62%	90.38%	87.53%	85.94%	86.98%	95.66%
17	97.11%	95.06%	94.43%	91.35%	90.14%	87.36%	85.80%	86.82%	95.15%
18	96.75%	94.75%	94.13%	91.11%	89.93%	87.19%	85.66%	86.67%	94.65%
19	96.39%	94.46%	93.86%	90.90%	89.74%	87.10%	85.62%	86.59%	94.09%
20	96.08%	94.18%	93.61%	90.89%	89.73%	87.05%	85.56%	86.55%	93.55%
21	96.00%	94.12%	93.57%	90.71%	89.58%	86.99%	85.53%	86.48%	91.94%
22	95.72%	93.90%	93.36%	90.55%	89.42%	86.87%	85.45%	86.39%	92.18%
23	95.47%	93.69%	93.16%	90.38%	89.29%	86.77%	85.37%	86.31%	91.43%
24	95.25%	93.49%	92.98%	90.24%	89.16%	86.69%	85.29%	86.24%	90.70%
25	95.04%	93.30%	92.81%	90.11%	89.04%	86.61%	85.25%	86.23%	89.96%
26	94.84%	93.15%	92.65%	89.97%	88.93%	86.53%	85.24%	86.23%	
27	94.76%	93.07%	92.59%	89.94%	88.83%	86.53%	85.23%	85.80%	
28	94.67%	93.02%	92.53%	89.91%	88.81%	86.52%	85.22%		
29	94.61%	92.97%	92.48%	89.88%	88.79%	86.52%			
30	94.55%	92.92%	92.43%	89.85%	88.77%	86.51%			
31	94.48%	92.87%	92.38%	89.83%	88.77%				
32					88.74%				

(개정)

[별표8-1]

연간 임금총액 지급률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약사
1	100%	100%	100%	100%	99.10%	94.21%	91.59%	93.37%	100%
2	100%	100%	100%	100%	98.36%	93.69%	91.17%	92.89%	100%
3	100%	100%	100%	99.37%	97.64%	93.20%	90.76%	92.41%	100%
4	100%	100%	100%	98.63%	96.95%	92.71%	90.36%	91.95%	100%
5	100%	100%	100%	98.24%	96.64%	92.59%	90.32%	91.81%	100%
6	100%	100%	100%	97.54%	95.98%	92.12%	89.93%	91.38%	100%
7	100%	100%	100%	96.54%	95.08%	91.44%	89.38%	90.78%	100%
8	100%	100%	99.63%	95.91%	94.50%	91.01%	89.03%	90.39%	99.98%
9	100%	99.79%	98.97%	95.34%	93.96%	90.60%	88.70%	90.01%	99.72%
10	100%	99.16%	98.37%	95.18%	93.79%	90.47%	88.62%	89.87%	99.70%
11	100%	99.01%	98.19%	94.71%	93.36%	90.13%	88.33%	89.55%	99.32%
12	100%	98.49%	97.70%	94.30%	92.96%	89.84%	88.08%	89.26%	98.90%
13	100%	98.01%	97.24%	93.92%	92.62%	89.56%	87.85%	88.99%	98.49%
14	99.74%	97.56%	96.84%	93.58%	92.31%	89.32%	87.66%	88.75%	98.03%
15	99.28%	97.16%	96.46%	93.40%	92.14%	89.23%	87.60%	88.66%	97.65%
16	98.99%	96.92%	96.24%	93.12%	91.88%	89.03%	87.44%	88.48%	97.16%
17	98.61%	96.56%	95.93%	92.85%	91.64%	88.86%	87.30%	88.32%	96.65%
18	98.25%	96.25%	95.63%	92.61%	91.43%	88.69%	87.16%	88.17%	96.15%
19	97.89%	95.96%	95.36%	92.40%	91.24%	88.60%	87.12%	88.09%	95.59%
20	97.58%	95.68%	95.11%	92.39%	91.23%	88.55%	87.06%	88.05%	95.05%
21	97.50%	95.62%	95.07%	92.21%	91.08%	88.49%	87.03%	87.98%	93.44%
22	97.22%	95.40%	94.86%	92.05%	90.92%	88.37%	86.95%	87.89%	93.68%
23	96.97%	95.19%	94.66%	91.88%	90.79%	88.27%	86.87%	87.81%	92.93%
24	96.75%	94.99%	94.48%	91.74%	90.66%	88.19%	86.79%	87.74%	92.20%
25	96.54%	94.80%	94.31%	91.61%	90.54%	88.11%	86.75%	87.73%	91.46%
26	96.34%	94.65%	94.15%	91.47%	90.43%	88.03%	86.74%	87.73%	
27	96.26%	94.57%	94.09%	91.44%	90.33%	88.03%	86.73%	87.30%	
28	96.17%	94.52%	94.03%	91.41%	90.31%	88.02%	86.72%		
29	96.11%	94.47%	93.98%	91.38%	90.29%	88.02%			
30	96.05%	94.42%	93.93%	91.35%	90.27%	88.01%			
31	95.98%	94.37%	93.88%	91.33%	90.27%				
32					90.24%				

□ 공고 제2018-05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을 이에
공포한다.

2018. 1.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가정의학과장”을 “건강검진팀에 근무하는 진료과장”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월 9,000천원”을 “월 20,000천원”으로 한다.

별표1중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5조 (실적평가기준) ① 기준급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도 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른다.</p> <p>1.~6. (생략)</p> <p>② 목표급은 다음 각 호 기준을 따른다.</p> <p>1.~2. (생략)</p> <p>3.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장과 <u>가정의학과장</u>에게는 1인 기준 초음파검사 월 100건 초과 시 초과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p> <p>4.~6. (생략)</p> <p>제7조 (진료실적급 합계액) ①기준급은 기본연봉 책정 시 확정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p> <p>1. (생략)</p> <p>2. 의사 : 월 2,000천원 ~ <u>월 9,000천원</u></p> <p>② (생략)</p>	<p>제5조 (실적평가기준) ① -----</p> <p>-----</p> <p>1.~6. (현행과 같음)</p> <p>②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건강검진팀에 근무하는 진료과장</u> -----</p> <p>-----</p> <p>-----</p> <p>4.~6. (현행과 같음)</p> <p>제7조 (진료실적급 합계액) ①-----</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월 20,000천원</u></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행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가정의학과	250,000	32,500	<u>가정의학과 전체</u>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19,500	직업환경의학과 전체

[별표 1] 개정(안)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u>건강 검진팀</u>	<u>내과</u>	250,000	<u>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u>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직업환경의학과 전체